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7가단114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락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성염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총정

담당변호사 송정윤, 최수령, 김정현

변론 종결 2019. 4. 9

판결 선고 2019.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B 답 21㎡ 중 별지 도면 표시 8,3,4,9,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3. 8. 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3. 7. 20. 서울 동작구 C 토지(이하 서울 동작구 D동에 위치한 부동산 들이므로 시,구,동의 표시 없이 번지로만 부동산을 특정한다)와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1984 . 5. 28. 이와 인접한 구 B 답 36㎡ 에 관하여 '사유지 불하에 의한분할'을 이유로 분할 신청을 하였고, 구 B 답 36㎡ 는 1984 . 6. 13. E 답 15㎡ 와 B 답21㎡ 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1984. 10. 24. 그중 E 토지만을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현재 C 토지 및 E 토지와 인접한 B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주차 장으로 사용하는 등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 7,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등포동작지사에 대한감정촉탁(감정보완촉탁)

결과(이하 '감정촉탁 결과'라 한다)w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 년 C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를 둘러싼 담장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2004년까지는 마당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해왔다.

원고는 2004년 무렵 서울시의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정책에 호응하여 담장을 허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점유를 계속해왔다.

따라서 원고는 점유를 개시한 1983. 8. 2.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2003. 8.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1983. 8. 2.이나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는지에 관하여살피건대,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은 감정촉탁 결과나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나타난 토지 분할 경과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다른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국식

별지